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2020. 2. 1.



농림축산식품부



1. 일반 ·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1
2. 포장재 보관료	4
3. 헐포장재 관리비	5
4. 양 곡 가 공 임	6
5. 포 장 임	8
6. 양곡가공보험료	9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 방법	9
8. 일 반 하 역 료	10
9. 톤 백 요 율	14
10. 항 만 하 역 료	15
11. 철 도 임	18
12. 트 렉 운 임	19
13. 해 송 운 임	22

1. 일반·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가. 일반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구 분	특 지					갑 지					을 지					야적	보관 보험료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쌀	312.8	285.3	233.4	201.3	176.6	276.6	252.9	210.2	177.9	155.8	251.8	229.8	190.7	161.6	140.9	113.0	2.80
현미 (TRQ 밥쌀 포함)	250.3	228.2	186.7	161.0	141.3	221.3	202.4	168.2	142.3	124.6	201.4	183.8	152.5	129.3	112.7	90.4	2.52
벼	193.8	176.5	147.6	124.4	108.8	171.3	156.5	130.3	109.5	96.0	155.8	142.1	118.7	99.9	87.6	69.7	1.96
보리쌀 눌린 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99.6	183.0	152.0	128.2	113.0	176.6	161.5	134.3	113.8	99.4	160.9	146.4	122.0	103.3	90.3	72.2	1.96
겉보리 쌀보리 밀	145.1	132.6	110.2	93.3	81.7	128.5	117.0	97.4	82.0	71.9	117.0	106.2	88.4	74.8	65.2	51.9	1.32

나.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구 분	특 지	갑 지	을 지	보 관 보험료
쌀	372.1	330.0	299.9	2.80
현미 (TRQ 밥쌀 포함)	297.7	264.0	239.9	2.52
벼	230.3	204.3	185.5	1.96
보리쌀, 눌린 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238.7	210.7	191.2	1.96
겉보리, 쌀보리, 밀	172.9	152.7	138.5	1.32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양곡보관료 및 보험료는 1일 톤당 요금이며, 보관 일수의 계산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다.
-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에 5.0%, 톤백으로 보관된 양곡은 5%를 각각 가산 적용한다.
 - 광역시 지역의 가산 대상에서 '95. 3. 1일 이후부터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제외한다.
 - 이 경우 단위당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는 버린다.
- (3)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되, kg까지로 한다.
- (4) 양곡 보관보험료는 지역과 등급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민간창고(농협창고 포함) 및 정부 소유 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에 대한 보관보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손해보험사에 지급한다.

(5)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특 지 : 특별시,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 갑 지 : ① 시 지역, ② 주요 항구도시 : 장항(차기 요율 개정 시 주요 항구도시 특혜조항 삭제 예정)

○ 을 지 :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

(6) 일반창고와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TRQ 밥쌀의 경우는 현미 보관료를 적용한다.

(7)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포장재 보관료

(단위 : 원/속)

구 분	단위(속/束)	보 관 료	
		가공공장	야 적
P.P 대	200매	15.6	7.6
지 대	200	8.6	4.4
P.E 대(10kg들이)	700	10.3	5.3
P.E 대(4kg들이)	1,000	6.2	3.0
현 P.P 대	200	8.0	4.4
톤백 P.P 대	20	23.7	11.6
현 톤백 P.P 대	10	12.4	6.8

부 대 조 건

- (1)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보관하는 포장재 보관료는 입고 다음 날부터 사용을 위해 출고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외 사항 보관료에 대하여는 양곡가공도급계약서 제13조에 규정한 포장재 보관료를 적용한다.
- (2) 이 요금은 1일당 요금이다.
- (3) 포장재 중 불용품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헨포장재 관리비

(단위 : 원/매)

구 분	단 위	관 리 비
헨 P·P 대	1매	17.6
헨 톤백 P·P 대	1매	104.7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관리비는 정부관리양곡 헨 포장재 관리요령에 따라 품위별로 선별 분류 보관한 헨 포장재에 적용하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지급하는 비용이다.(품위선별 보관을 하지 아니한 헨 포장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관리비는 포장재의 등급이나 가용, 불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양곡가공임

(단위 : 원/제품 톤당)

가공구분	제품곡종	원료곡종	가 공 임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 외 (특수지역)
정상가공	쌀	벼	111,313	104,281	96,831	89,017
	쌀	현미	98,730	92,493	85,885	78,954
	현미	벼	60,861	57,017	52,943	48,671
	보리쌀	겉보리	225,183	210,958	195,886	180,077
	눌린 보리쌀	겉보리	250,951	235,099	218,301	200,683
수분조절 도정	보리쌀	쌀보리	167,150	156,589	145,401	133,668
	눌린 보리쌀	쌀보리	213,502	200,015	185,724	170,73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가공임은 포장 방법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원료의 하차료 및 입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수분 조절도정 가공임은 쌀보리를 원료로 하여 수분조절 가공한 제품에 적용한다.
- (3) 이 표의 가공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상여금,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5. 포 장 임

(단위 : 원/제품 톤당)

포 장	규 격	포 장 임
P.P 대	40kg 들이	6,140
P.P 대	20kg 들이	16,643
지 대(봉합식)	20kg 들이	<u>16,444</u>
지 대(봉합식)	10kg 들이	<u>18,136</u>
P.E 대	10kg 들이	17,697
P.E 대(외포장 포함)	4kg×5개 들이	34,870
P.P 대	5kg 들이	21,026
P.P 대(톤백)	5kg×180개 들이	27,942
P.P 대(톤백)	1,000kg 들이	7,294
P.P 대(점보백)	40kg×30개 들이	10,443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포장임은 포장 내용물과 관계없이 적용하며, 제품의 상차료 및 출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포장임에는 포장용지의 하차 및 입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표의 포장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포장임(지대 10kg 및 20kg에 한함)에는 1톤당 3% 물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5)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6) P.P 대(점보백) 포장임의 경우 40kg P.P 대 포장임과 별도로 지급하며, 해외 식량 원조용 쌀에만 적용한다.
- (7)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포장분부터 적용한다.

6. 양곡가공보험료

(단위 : 원/제품 톤당)

제 품	원 료	보 험 료
쌀	벼	531
쌀	현 미	595
현 미	벼	514
보리쌀, 눌린 보리쌀	겉보리, 쌀보리	315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보험료는 원료의 입고 후 제품출고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가공 중지와 제품의 인수기일 경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관보험료를 적용한다.
- (2) 이 표의 보험료에는 정부양곡가공화재공제특약협정서 제1조 1호(공제 목적물의 범위)에 규정된 모든 물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가공분부터 적용한다.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 방법

- 양곡관리관이 가공을 요청한 양곡에 대한 가공비용의 계산은 가공임, 포장임, 원료의 하차·입고료 및 제품의 출고·상차료를 각각 실 양곡 중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실 양곡 중량을 kg 단위까지 계산한다.

8. 일반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지대 10kg	지대 20kg	지대 10·20kg 외
1. 철 도 발 송 료	6,287	6,287	6,287
2. 철 도 도 착 료	6,420	6,420	6,420
3. 상 차 료	<u>4,426</u>	<u>4,057</u>	3,688
4. 하 차 료	<u>4,014</u>	<u>3,679</u>	3,345
5. 입 고 료	<u>5,409</u>	<u>4,959</u>	4,508
6. 출 고 료	<u>5,409</u>	<u>4,959</u>	4,508
7. 매 입 장 소 입 고 료	16,237	16,237	16,237
8. 매 입 직 송 상 차 료	10,713	10,713	10,713
9. 매입장소경비료(당일 입고)	290	290	290
10. 선 별 료	3,345	3,345	3,345
11. 이 적 료	3,345	3,345	3,345
12. 이 송 료			
- 20m 초과 50m까지	3,345	3,345	3,345
- 50m 초과 20m마다	1,644	1,644	1,644
13. 검 근 료	3,345	3,345	3,345
14. 복 포 훈 증 소 독 비	936	936	936
15. 양곡중량 시험 작업비	5,995	5,995	5,995
16. 호 송 료	3,486	3,486	3,486

2) 포장재

(단위 : 원/속)

항 목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 철도발송료	203.0	114.5	261.2	147.4	187.7	128.5	180.7
2. 철도도착료	207.6	117.2	266.4	150.4	191.8	131.0	184.7
3. 상 차 료	118.5	67.0	152.5	86.1	109.6	75.0	105.3
4. 하 차 료	107.8	60.5	138.3	77.5	99.7	68.1	96.1
5. 입 고 료	144.9	81.7	186.4	105.0	134.0	91.6	129.0
6. 출 고 료	144.9	81.7	186.4	105.0	134.0	91.6	129.0
7. 이 적 료	107.8	60.5	138.3	77.5	99.7	68.1	96.1
8. 이 송 료							
- 20m 초과 50m까지	107.8	60.5	138.3	77.5	99.7	68.1	96.1
- 50m 초과 매 20m마다	52.8	29.7	68.1	38.4	49.0	33.5	47.0
9. 검 수 료	107.8	60.5	138.3	77.5	99.7	68.1	96.1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 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노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3)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속)를 기준으로 한다.
- (4) 철도 수송 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다만, 철도발송 시 호송인을 붙이면 별도로 이 표의 호송료를 적용한다.
- (5) 매입장소 입고료는 매입장소의 보관창고로 입고시키는 때에만 적용하며, 매입장소와 매입 양곡을 보관한 창고가 2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때는 일반하역료를 적용한다.
- (6) 매입장소 입고료는 50m 이내의 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 (7) 매입장소 경비료는 매입장소와 보관창고의 거리와 관계없이 매입 당일 입고시키는 양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당일 매입물량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8) 매입 직송 상차료는 순회 매입 또는 매입장소의 창고여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입물량을 다른 지역 창고로 직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9) 선별료와 이적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10) 이송료는 20m 초과 200m까지 이송 작업할 때 적용하며, 20m 이내의 이송료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송 거리 이내라도 양곡관리관(분임양곡관리관 포함)의 지시가 있을 때는 운반구를 사용 할 수 있다.
- (11)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 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에서 인정한다.)
- (12) 양곡 훈증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관급으로 한다.
- (13) 개포장 작업 도중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실제 일수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지급한다.
- (1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5)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9. 톤백 요율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1. 톤백 매입료	6,266
2. 톤백 매입장소 입고료	6,092
3. 톤백 매입 직송상차료	5,583
4. 톤백 상차료	2,431
5. 톤백 하차료	2,431
6. 톤백 입고료	4,216
7. 톤백 출고료	4,216
8. 톤백 이송료	
- 20m초과 50m까지	2,771
- 50m초과 매 20m마다	1,362

부 대 조 건

- (1) 부대조건은 『8. 일반하역료 1)양곡』을 적용하되, 톤백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톤백 매입료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농가가 톤백으로 출하한 벼를 매입한 때에만 적용한다.(RPC에서 산물벼를 매입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0. 항만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구 분	항 목	요 율
일 반 항	적 선 료	10,887
	양 육 료	10,433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 선 료	11,191
	양 육 료	10,712
인천항	적 선 료	11,191
	양 육 료	10,712
평택, 당진항	적 선 료	11,191
	양 육 료	10,712
부산항 및 제주 전항	적 선 료	9,323
	양 육 료	8,588
공 통	경 비 료	267

2) 포 장 재

(단위 : 원/숙)

항 목		P. P대 40kg들이	P. 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 E대 10kg들이	P. E대 4kg들이	P. P대 톤백들이
일 반 항	적선료	1,107	423	737	282	258	216	1,892
	양육료	1,058	403	707	270	251	209	1,808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선료	1,139	434	756	288	269	224	1,945
	양육료	1,085	416	724	278	255	213	1,857
인 천 항	적선료	1,139	434	756	288	269	224	1,945
	양육료	1,085	416	724	278	255	213	1,857
평택, 당진항	적선료	1,139	434	756	288	269	224	1,945
	양육료	1,085	416	724	278	255	213	1,857
부산항 및 제주전항	적선료	945	362	631	242	224	186	1,616
	양육료	871	333	582	222	207	172	1,489
공 통	경비료	27.5	10.3	18.2	6.9	6.4	5.5	46.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 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선적할증 및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인천항의 경우 부잔교 이송 작업 시에는 톤당 1,460원을 가산 적용하되,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작업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5) 적선 양육 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 (6) 각 단계별 작업 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 (7) 경비료는 양곡 또는 포장재를 적선, 양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1기(15일)당 적용하며, 양곡 또는 포장재를 직반출입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 실비 정산한다.(다만, 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에서 인정)

(9) 일반항 요율 적용 시 다음 지역의 경우는 아래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 기타 도서 지역에 대해 조작 지시 발생 시에는 적선 양육분 100%를 적용한다.

(10)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1)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1. 철 도 입

- 한국철도공사 화물 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을 낸다. 다만, 호송료는 별도 책정한 일반하역료에 의하여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 화물 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에서 제외한다.

12. 트럭운임

1) 양곡(국내 양곡과 수입 양곡 통합 운영)

(단위 : 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물(Bulk)
10km 까지	7,086	7,043
20km "	9,187	9,123
30km "	11,170	11,117
40km "	13,100	13,036
50km "	14,515	14,440
60km "	15,469	15,394
70km "	16,509	16,434
80km "	17,506	17,409
90km "	18,438	18,363
100km "	19,082	18,974
120km "	19,350	19,264
140km "	20,582	20,464
160km "	21,654	21,547
180km "	22,641	22,533
200km "	24,409	24,302
230km "	24,710	24,592
260km "	25,900	25,792
290km "	28,269	28,140
320km "	28,472	28,322
350km "	30,777	30,606
380km "	31,881	31,731
410km "	34,208	34,036
460km "	36,705	36,523
510km "	38,946	38,764
510km 초과 매 50km마다	2,273	2,262

※ 국내 양곡과 수입 양곡의 주요 운송 단위(25톤 화물 카고트럭)가 동일하므로 통합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대별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0km 까지	313	175	400	224	287	197	278
20km "	403	227	519	292	373	255	359
30km "	492	277	630	354	455	311	438
40km "	575	325	741	418	533	364	512
50km "	638	361	821	464	591	402	567
60km "	681	385	876	495	628	431	606
70km "	726	408	934	525	671	459	646
80km "	770	434	989	557	713	488	685
90km "	812	457	1,042	586	751	513	721
100km "	839	473	1,080	608	776	531	747
120km "	850	480	1,095	619	787	538	758
140km "	906	511	1,163	656	837	570	806
160km "	951	537	1,223	690	880	601	847
180km "	995	561	1,280	723	921	628	885
200km "	1,074	606	1,381	778	933	680	955
230km "	1,087	613	1,397	788	1,006	687	967
260km "	1,140	643	1,465	828	1,053	720	1,013
290km "	1,242	702	1,599	904	1,150	786	1,106
320km "	1,253	708	1,610	909	1,258	791	1,115
350km "	1,352	763	1,739	982	1,252	854	1,205
380km "	1,401	790	1,802	1,016	1,297	887	1,248
410km "	1,504	848	1,935	1,090	1,390	951	1,339
460km "	1,613	911	2,075	1,172	1,493	1,019	1,435
510km "	1,712	965	2,202	1,241	1,583	1,084	1,523
510km 초과 매 50km마다	101	57	130	72	92	63	89

부 대 조 건

- (1) 양곡 운송임은 국내 양곡과 수입 양곡 모두 동일 운송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수입양곡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항지에서
보관창고까지는 계약에 따른 운송요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운송임은
양곡 운송임을 적용한다.)
- (2) 동일 거리 내에서는 동일 운임을 적용한다.
-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는 실비를 지급하되, 왕복 시 편도에 타 화물을 수송할 때는 편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수송 거리는 km까지 계산하되, 1km 미만은 4사 5입 한다. 다만, 전 수송 거리가 1km 미만이면 1km로 계산한다.
- (5)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다만 총 적재량이 2톤 미만이면 2톤으로 계산한다.
- (6)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7)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8)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부터 적용한다.

13. 해송 운임

1) 양 곡

(단위 : 원, 3급품 톤/마일당)

거 리	요 율
1~20 마일	264.02
21~50	126.91
51~100	25.67
101~200	22.89
201~400	20.96
401 이상	15.27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20 마일	32.30	12.34	21.56	8.23	7.59	6.33	55.23
21~50	15.53	5.92	10.34	3.94	3.65	3.03	26.56
51~100	3.12	1.19	2.09	0.80	0.73	0.60	5.35
101~200	2.78	1.06	1.84	0.71	0.66	0.53	4.77
201~400	2.57	0.98	1.70	0.64	0.59	0.50	4.38
401 이상	1.84	0.71	1.22	0.46	0.43	0.35	3.17

부 대 조 건

- (1) 양곡의 운임 계산 방법은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내항 화물선 운임 규정”에 의하되 화물 등급상의 인수(因數)와 화물 톤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등급은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등급표(백미, 외미, 소맥 등은 52, 소맥분은 57, 대맥, 조미는 65, 두류는 84 등)에 의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곡종의 화물인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현미 · 정맥 · 조 · 수수 52, 압맥(압소맥) · 밀쌀 65, 옥수수 84, 혼합곡 55
- 나) 화물 톤수의 계산 방법은 동 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정미중량에 포장재료 중량을 가산 적용하되 포장재료 중량은 40kg들이 P.P대는 0.14kg, 20kg들이 P.P대는 0.08kg, 20kg들이 지대는 0.18kg, 톤백들이 P.P대는 2.5kg으로 한다.
- (2) 운항 구간이 20마일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20마일을 최저운임으로 한다.
- (3) 양곡의 적재중량은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 운임에는 화물등급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5)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 보관료』 항목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6) 해양수산부 고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화물입항료의 기본료는 동 고시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7) 해송 운임 요율을 적용하면서 다음 지역의 경우는 아래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 기타 도서 지역에 대한 조작 지시 발생 시에는 실비 정산한다.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9) 이 요율은 2020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부터 적용한다.